



교회협 언론 제 2015-16호

2015. 10. 20

수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중 위원장

참조 통신심의기획팀

제목 '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 규칙안'에 관한 본 위원회 의견

그리스도의 평화가 위원장님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

본 위원회는 귀 위원회가 10월 2일 입안 예고한 <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 규칙안>에 대하여 권력기관에 의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.

귀 위원회는 개정 취지로 “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”이라고 밝히고,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은 ‘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’이 하도록 한 제10조 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제3자의 신청이나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그러나 명예훼손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으로 제3자의 판단사항이 아니며, 제3자가 판단하게 될 경우 매우 심각한 또 다른 명예훼손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입니다. 또한 이미 그 대리인에 의한 심의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며 민·형사상 소송 제기 등의 다른 구제 방법도 있기에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귀 위원회의 개정 취지는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.

나아가 제3자의 심의신청과 방심위의 직권 심의가 가능할 경우 정치인이나 기업인, 권력기관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질의에 대하여 귀 위원회는 확실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본 위원회는 금번 귀 위원회의 <심의규정 일부개정 규칙안>에 대하여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.

- 문의 : 교회협 언론위원회(☎02-742-8981, 강석훈 목사 010-2766-6246)

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
언론위원회
위원장 전병금

